

# 학술연구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1. 09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7. 03. 10.

담당 : 교학팀(950-5406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심의사항)	제4조(구성)
제5조(소위원회)	제6조(위원장)	제7조(임기)	제8조(회의소집과 의결)
제9조(회의록)	제10조(기피사항)	제12조(업무관장)	제13조(시행세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, 연구 및 관리 운영하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2조(명칭)** 이 위원회는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(개정 15.02.06)

**제3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술연구심의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
2. 학술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술연구 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4. 학술연구실적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
5. 학술연구심의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사항
6. 연구비 지원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17.03.10)

**제5조(소위원회)**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**제7조(임기)** 위원의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8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9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1/2이상이 서명 하여야 한다.(개정17.03.10)

**제10조(기피사항)**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의 연구계획 및 연구실적의 심사 및 심의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
**제12조(업무관장)**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교학처 교학팀에서 관장한다.(개정15.02.06)(개정17.03.10)

**제13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연구진흥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